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66
----------	-------

발의연월일 : 2025. 8. 13.

발 의 자 : 유상범 · 김상훈 · 구자근
김선교 · 박충권 · 송석준
박준태 · 조배숙 · 박성민
곽규택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세계잼버리,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행사 참가를 계기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회 종료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난민 신청과 행정소송을 반복하며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실제 난민 사유 없이 단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 난민’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는 10년 이상 난민 신청을 반복하며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난민 신청 횟수나 소송 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난민 불인정 결정 이후 반복 신청 시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 여부를 심사하는 ‘재심사 적격심사’를 도입하고,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난민인정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상담과 취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 시 통역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안 제5조의2 신설)

- 1)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함.
- 2) 법무부장관은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3)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심사 결과 난민불인정 결정 등의 이유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 결정을 하도록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4)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심사 결과 난민불인정 결정 등의 이유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격 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유를 적은 부적격 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난민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안 제22조의2 신설)

- 1)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한 후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함.
- 2)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취하 간주에 관한 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즉시 고지하도록 함.

다. 난민위원회 개방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안 제25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4항 등)

- 1) 난민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15명 이하에서 50명 이하로 확대하고, 난민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난민위원회의 개방성을 강화함.
- 2) 난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분과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난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난민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함.

라. 이의신청 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안 제28조)

- 1) 난민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사유를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난민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난민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인의 진술이나 그 자료 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마.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상담 제공 및 취업 지원(안 제34조제3항, 제34조의2 및 제39조제2항·제3항 신설)

1)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또는 번역 지원(안 제45조의2 신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 등이 우리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거나 우리말로 적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통지를 할 때에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부적격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제한(안 제46조의2제1호 및 제2호 신설)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해 거듭하여 불복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재심사의 부적격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

아.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난민인정 신청 알선·권유행위 처벌(안 제47조)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을 ““난민신청자”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다만, 다음의 사람은 제외한다.

- 1) 제5조의2에 따라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그 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
- 2)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그 심사 결과 불회부 결정을 받은 사람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항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
2. 제8조제6항 후단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가 종료된 사람
3.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에 따른 결정을 받기 전에 난민인

정 신청을 취하한 사람

4.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6.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다시 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제8조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결정 등의 이유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결정

2.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따른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

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유를 적은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적격심사를 받는 사람(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난민전담공무원(이하 “난민심사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적격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문서 등 자료의 제출 요구
2. 출석 요구
3. 질문 또는 면접의 실시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난민심사관 등)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등을 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심사관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과 사실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2. 난민 관련 법제도·절차
3.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의 지

위 및 처우

4. 그 밖에 난민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난민심사관등의 자격, 업무수행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난민심사관”을 “난민심사관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난민심사관”을 “난민심사관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한국어”를 “우리말”로 한다.

제15조 중 “난민심사관”을 “난민심사관등”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난민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 ① 난민신청자가 제5조·제6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같은 항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같은 항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5조·제6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자에게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즉시 서면과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제2항 중 “15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사유를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

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인의 진술이나 그 자료 없이 이의신청을 심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취업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인정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인도적체류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제3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난민인정자”는 “인도적체류자”로 본다.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사정 등으로 특별히 취업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통역 또는 번역의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우리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거나 우리말로 적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거나 각 호에 따른 결정통지를 할 때에 통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번역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을 받는 사람

3.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는 사람
4.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을 받는 사람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
6. 제21조제6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는 사람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통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역·번역 지원 업무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의2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행정심판 청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
2.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대상이 된 처분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신청 등을 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

2.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3. 다음 각 목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

나.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2항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가목, 제5조의2(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난민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6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등)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제5조(행정심판 청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2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위촉위원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u> <u>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4. <u>“난민신청자”란</u> ----- ----- ----- ----- -----.
<u>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u>	<u>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다만, 다음의 사람은 제외한다.</u> 1) <u>제5조의2에 따라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그 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u> 2) <u>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그 심사 결과 불회부 결정을 받은 사람</u>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5. · 6. (생략)

<신설>

5. · 6.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

사)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항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

2. 제8조제6항 후단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가 종료된 사람

3. 제18조제1항 · 제2항 및 제19조에 따른 결정을 받기 전에 난민인정 신청을 취하한 사람

4.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6.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다시 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제8조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결정 등의 이유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결정

2.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따른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결

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유를 적은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적격심사를 받는 사람(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난민전담공무원(이하 “난민심사관등”)으로 하여금 적격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문서 등 자료의 제출 요구

제8조(난민인정 심사) ① ~ ③
(생략)

④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⑥ (생략)

<신설>

2. 출석 요구

3. 질문 또는 면접의 실시

제8조(난민인정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난민심사관 등)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등을 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심사관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과 사실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2. 난민 관련 법제도·절차

3.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의 지위 및 처우

4. 그 밖에 난민 업무의 처리를

제10조(사실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u>난민심사관</u>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3조(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u>난민심사관</u>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u>한국어</u>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u>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u>난민심사관등의 자격, 업무수행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0조(사실조사) ① ----- ----- ----- ----- ----- ----- <u>난민심사관등</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u>난민심사관등</u>----- ----- ----- ----- -----. 제14조(통역) ----- ----- <u>우리말</u>----- ----- ----- ----- -----
--	---

한다.

제15조(난민면접조서의 확인)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 ⑧ (생략)

<신설>

---.

제15조(난민면접조서의 확인) 난민심사관등-----

-----.

제21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난민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 ① 난민신청자가 제5조·제6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u>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u>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신 설></u>	2.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3호(같은 항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3호(같은 항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5조·제6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자에게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즉시 서면과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u> ----- ----- -----.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
---	---

<신 설>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임명) ①·②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청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
-- 50명 -----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위원의 임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한 차례만 연임-----
-----.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7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

제28조(난민위원회의 운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때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①·②
(생략)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자료
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사유
를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
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
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위
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
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한까
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 이의신청인의 진술이나 그
자료 없이 이의신청을 심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
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2(취업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인정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생략)

<신 설>

제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인도적체류자에게

<신 설>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제3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난민인정자”는 “인도적체류자”로 본다.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사정 등으로 특별히 취업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45조의2(통역 또는 번역의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우리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거나 우리말로 적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거나 각 호에 따른 결정통지를 할 때에 통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번역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을 받는 사람

3.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는 사람

4.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을 받는 사람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

6. 제21조제6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는 사람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통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역·번역 지원 업무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의2 (생략)

<신설>

제47조(벌칙) (생략)

<신설>

제46조의3 (현행 제46조의2와 같음)

제46조의2(행정심판 청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
2.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대상이 된 처분

제47조(벌칙) ① (현행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의2와 같음)

②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신청 등을 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
2.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3. 다음 각 목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u><신 설></u>	<u>가.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따</u> <u>른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u> <u>격 결정</u> <u>나.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u> <u>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u> <u>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에</u> <u>따른 난민불인정결정</u> <u>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2항의 행</u> <u>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u> <u>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u> <u>한다.</u>
---------------------------	---